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11월 07일 18시 51분



목차

목차	2
공지사항	3
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	3

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

2024.09.05 조회수 153 담당부서 상수도과 연락처 061-659-4915



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

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
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.

시행
시기

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

신고 대상



저수조를 설치하여
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
건축물 또는 시설*의
소유자나 관리자

*연면적 5,000㎡ 이상
건축물, 5층 이상 아파트 등
(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
각호에 해당하는 시설)

신고 시점



법 시행 (2024. 7. 17)

시행 이후
저수조를 신규로
설치한 경우

시행 당시
저수조를 운영하고
있는 경우

저수조
설치일로부터
30일 이내

시행일로부터
1년 이내
(~2025. 7. 16.)

신고 방법



정부24

정부24 민원서비스

저수조 설치 현황
신고서 작성

제출서류 첨부
저수조 시공도면

민원 신청

※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설치 현황
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
우편 등 전자체에 제출 가능

위반 시



신고하지 아니하거나
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100만원 이하의
과태료 부과

1차 50만 원
2차 70만 원
3차 이상 100만 원

목록

이전글

추석 연휴 기간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안내

다음글

제61회 한마을 학생미술사생대회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